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10일)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4명,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1,930명(해외유입 6,60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2,61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4,673건(확진자 9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7,291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4명이다.
 -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550명으로 총 72,226명(88.1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218명이 격리 중이다. 위증증 환자는 184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86명(치명률 1.81%)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2.10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14	169	18	14	18	14	0	0	1	157	5	2	2	2	1	2	9	0
누계	75,327	24,712	2,800	8,303	3,805	1,812	1,078	863	176	19,524	1,683	1,536	1,984	962	702	2,940	1,941	506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10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추정)유	입국가			확인	단계		구적
구분	합계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30	0	9	9	9	3	0	6	24	16	14
누계	6,603 ¹⁾	39 ¹⁾	2,955	1,145	2,158	283	23	2,837 ¹⁾	3,766	3,609 ²⁾	2,994 ^{1),2)}
7/1	0,003	(0.6%)	(44.8%)	(17.3%)	(32.7%)	(4.3%)	(0.3%)	(43.0%)	(57.0%)	(54.7%)	(45.3%)

* 아시아(중국 외): 네팔 1명(1명), 인도네시아 3명(1명), 인도 2명(2명), 러시아 1명(1명), 싱가포르 1명, 파키스탄 1명, 유럽 : 헝가리 6명, 독일 3명(1명), 아메리카: 미국 8명(5명), 멕시코 1명(1명),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급화국 1명, 나이지리아 1명(1명), 에티오피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¹⁾ 중복 집계 정정 : 2.8. 0시 기준 검역 -1명(유입국가 중국 -1, 검역단계 -1, 외국인 -1), ³ 역학조사 결과 국적 변경 : 2.9. 0시 기준 외국인 -1명, 내국인 +1명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I L G (20.1.3 E	· · · · · · · · · · / -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2.9.(화) 0시 기준	71,676	8,328 ¹⁾	189	1,482
2.10.(수) 0시 기준	72,226	8,218	184	1,486
변동	(+)550	(-)110	(-)5	(+)4

* 2월 9일 0시부터 2월 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¹⁾ 중복 집계 정정(2.8. 0시 기준, 검역 -1명)









たけるよ 子り のとなると 外包

- □ **2월 10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2월 1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4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45.7명), 수도권에서 344명(83.1%) 비수도권에서는 70명 (16.9%)이 발생하였다.

(주간: 2.4일~2.10일, 단위: 명)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구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10일(0시 기준)	414	344	5	17	16	27	5	-
주간 일 평균	345.7	271.4	13.7	13.1	17.1	23.9	4.4	2.0
주간 총 확진자 수	2,420	1,900	96	92	120	167	31	14

○ 수도권

(주간: 2.4일~2.10일, 단위: 명)

								(1 1 . 2.72 2.10	2, [1] . 6)
구분	2.4.	2.5.	2.6.	2.7.	2.8.	2.9.	2.1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37	257	274	264	207	217	344	271.4	1,900
서울	166	122	142	141	111	86	169	133.9	937
인천	43	25	24	15	17	14	18	22.3	156
경기	128	110	108	108	79	117	157	115.3	807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1명*이다.
- * (구분) 환자 36명(+1), 종사자 10명, 간병인 18명, 가족/보호자 27명(지표포함 +2)
- (서울 강북구 사우나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 * **(구분)** 이용자 14명, 종사자 3명(지표포함), 가족 10명(+1), 지인 7명
- **(인천 인테리어업 관련)** 2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 (구분) 종사자 6명(지표포함). 가족 5명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 2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3명*이다.
- * (구분) 교인 21명(지표포함), 학원생 26명, 학원 교사 2명, 기타 4명
- (경기 안양시 조경업체/일기족 관련) 2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 (구분) 가족 5명, 직원 3명, 기타 2명(지표포함)
- (경기 안산시 제조업/이슬람성원 관련) 2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 **(구분)** 직원 7명(지표포함), 교인 3명
- (경기 고양시 (춤)무도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 (구분) 방문자 14명(지표포함, +5), 가족 2명(+1), 기타 3명(+1)
- (경기 안산시 인테리어업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8명*이다.
- * (구분) 종사자 24명(지표포함), 가족 20명(+2), 기타 4명
- (경기 평택시 제조업 관련) 2월 7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7명*이다.
- * (구분) 종사자 47명(지표포함, +4), 가족 및 지인 7명, 기타 3명

○ 충청권

(주간 :	2.4일~2.1	0일.	단위	:	명)

								(무산 : 2.4월~2.10	일, 단취 : 명)
구분	2.4.	2.5.	2.6.	2.7.	2.8.	2.9.	2.1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19	13	23	16	10	10	5	13.7	96
대전	2	-	8	6	4	2	-	3.1	22
세종	-	-	-	1	1	1	1	0.6	4
충북	4	2	2	1	-	2	2	1.9	13
충남	13	11	13	8	5	5	2	8.1	57









地震社 多见 心对社 外到

- (충북 충주시/전북 김제시 육류가공업체* 관련) 2월 2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5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충주시 업체	41(+1)	종사자 27명, 회사2 4명, 가족 5명(+1), 지인 5명
② 김제시 업체	24(+8)	방문자 3명, 종사자 14명(+4), 가족 6명(+3), 기타 1명(+1)

* (업종) 닭고기 가공업체

○ 호남권

(주간: 2.4일~2.10일, 단위: 명)

구분	2.4.	2.5.	2.6.	2.7.	2.8.	2.9.	2.1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15	14	14	14	7	11	17	13.1	92
광주	12	14	12	10	7	8	14	11.0	77
전북	1	-	1	-	-	3	2	1.0	7
전남	2	-	1	4	-	-	1	1.1	8

- (광주 북구 교회2/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6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북구 교회2	11	교인 6명(지표포함), 기타 5명
② 북구 에이스 TCS*	21	IM 선교회 에이스 TCS 15명, 기타 6명
③ 어린이집 관련	21	원아 3명, 교직원 7명, 기타 11명
④ 광산구 광주 TCS*	140(+2)	학생 88명(+2), 교직원 24명, 교인 7명, 기타 21명
⑤ 캠프 관련	33	방문자 11명 추가전파 22명 **(지역) 서울 4명, 경기 19명, 울산 3명, 경남 7명

- * TCS(Two Commandment School) : 미국 초중고 입시과정(기숙형)
- ** 경기 안성 TCS 관련 사례 중 역학조사 과정에서 캠프 참석자에 의한 전파 확인되어 재분류

○ 경북권

(주간 : 2.4일~2.10일, 단위 : 명)

구분	2.4.	2.5.	2.6.	2.7.	2.8.	2.9.	2.1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13	20	21	12	25	13	16	17.1	120
대구	7	14	17	11	20	9	14	13.1	92
경북	6	6	4	1	5	4	2	4.0	28











- (대구 북구 사무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5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북구 사무실 관련	30(+2)	가족 8명(지표포함), 동료 9명, 지인 8명(+1), 기타 5명(+1)
② 북구 음식점 관련	15	종사자 7명, 방문자 4명, 가족 4명

- * (지역) 대구 23명(+12), 경북 20명(+2), 경기 2명
- ** (**추정감염경로**) 북구 사무실 직원 → 음식점 방문
- (대구 북구 일가족 관련) 2월 8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일가족 관련	9(+4)	가족 5명(지표포함, +1), 지인 1명, 기타 3명(+3)
② 치과 관련	8(+3)	이용자 5명, 종사자 1명(+1), 가족 2명(+2)

- (대구 동구 체육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체육시설 관련	14(+1)	이용객 8명, 가족 2명(지표포함), 지인 3명, 기타 1명(+1)
② 사우나 관련	4	이용객 2명, 가족 2명

* (지역) 대구 16명(+1), 인천 2명

○ 경남권

(주간: 2.4일~2.10일, 단위: 명)

구분	2.4.	2.5.	2.6.	2.7.	2.8.	2.9.	2.1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35	39	26	12	11	17	27	23.9	167
부산	26	33	14	8	7	9	18	16.4	115
울산	2	-	2	-	-	3	-	1.0	7
경남	7	6	10	4	4	5	9	6.4	45

- (부산 서구 항운노조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 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7명*이다.
- * (구분) 종사자 34명(지표포함), 가족 16명(+1), 지인 1명, 기타 6명(+2)









地方 子见 心对社 사회

- (부산 중구 재활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재활병원 관련	22(+2)	종사자 5명, 환자 9명(+1), 간병인 4명(+1), 가족 4명
② 목욕탕 관련	6	이용객 3명, 가족 1명, 동료 1명, 기타 1명

- (부산 해운대구 요양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요양시설 관련	9(+4)	종사자 2명(지표포함), 환자 6명(+3), 가족 1명(+1)
② 병원 관련	8(+2)	종사자 2명, 환자 5명(+2), 가족 1명

- * (**추정감염경로**) 요양시설 입소자 → 병원 입원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 변이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에 따른 국내 유입 (80명)*이 중가하고, △ 자가격리 미흡** 및 격리면제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다.
 - * 입국단계(<mark>38명)</mark>, 격리단계(<mark>28명</mark>), 국내전파(14명)/ 내국인 58명, 외국인 22명
 - ** 가족 내 전파 3건(6명), 지역사회 n차 전파 1건(8명, 친족)
 - *** 일본 격리면제자에 의한 충북·전북 지역 54명 감염 추정 사례

【 변이바이러스 대응강화 추진방향 】

추진과제	주요내용
① 변이바이러스 <mark>감시</mark> 강화	○ 변이주 유전체 분석대상·분석기관 확대 및 분석시간
① 단어나이디드 몹시 용화	$\underline{ ext{C}}^{\pm}\Rightarrow$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신속하게 파악·대응
② 변이바이러스 위험국	○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고려 하여 방역강화국가 지정,
지정 및 방역강화	주기적 조정 ⇒ 항공편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
	○ 모든 해외입국자 는 <u>3회 PCR 검사</u> 실시
③ 해외입국자 검사 확대	- 입국 전(PCR 음성 확인서) ⇒ 입국 직후(시설 또는 자가격리
	후 1일 이내) ⇒ 격리 해제 전
	○ 변이발생국은 격리면제제도 원칙적 중단(예외적 사유만 허용)
④ 해외입국자 <mark>격리</mark> 강화	○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특별 <u>관리</u> ⇒ 격리 중 전파 차단
⑤ 강화된 <mark>환자관리</mark> 적용	○ 영국·남아공·브라질 환자 1인실 격리 → 모든 해외유입
영화한 <mark>환자판디</mark> 작용	확진자 1인실 격리







- 먼저, 변이바이러스 **유전체 분석기관을 확대***(2개 → 8개 기관, ~'21.3월)하고, 분석기법을 단순화**하여 신속하게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등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신속하게 파악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 * (현행) 질병청 및 민간 1개(2개) → (개선) 질병청. 질병대응센터(5개). 민간 2~3개(8개)
 - * (현행) 바이러스 전체 분석(5~7일 소요) → (개선) 변이부위 분석(3~4일 소요) (25~)
- 또한, 각 국가별 변이바이러스 위험도(점유율 등)를 고려하여 방역강화국가* 지정을 확대하고, 아프리카발 입국자는 남아 공 변이의 위험도 및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감시체계 등을 감안하여 **남아공과 동일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2.22~)**할 계획이다.
 - * 2.9일 현재 필리핀, 네팔, 영국, 남아공
- 모든 해외 입국자(국민 포함)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화 (224~)하여, 총 3회 검사(입국전, 입국 직후, 격리해제 전)을 시행한다.
 - * 외국인 입국자 PCR음성획인서 제출 의무화(1.8일~) → 국민 입국자까지 확대(2.24일~)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은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제도를 중단하며, 예외적 사유(신속통로국가, 공무국외출장 등)만 허용하되 모든 격리면제자는 입국 직후 검사(임시생활시설) 외에 입국 후 5~7일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2.15~)한다.
- 또한,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하여, **격리이행** 및 중상 모니터링(1일 2회 이상)을 철저히 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감염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 대상으로 1인실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 우선 **접종기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도입 시기· 물량 등을 고려하려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 국립중앙의료원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코로나19 중앙·권** 역예방접종센터*(4개소)로 지정하여 2월부터 설치하고,
 - * (중앙) 국립중앙의료원, (권역) 순천향대 천안병원, 조선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 전국 시·군·구에는 250여 개소의 지역예방접종센터를 설치 하되, 이 중 **18개소**(시도별 1개소, 경기도 2개소)는 **3월 중 우선적** 으로 설치**한다.
 - ** (지역) (3월 중) 18개소 → (7월~) 약 232개소
- **위탁의료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기존 국가예방접종 참여의료 기관 대상 조사 결과(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협조) 총 16,397개 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 교육 개설*(2.8일) 및 지자체별 임시예방접종 계획 수립 일정에 따라, ^스백신 보관·관리, ^스인력·시설 확보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시스템(http://covidedu.kohi.or.kr). 교육대상자별(5개분야) 교육과정 개설
- 이상반응 대응을 위해 **아나필락시스 대웅 매뉴얼**(의료인용) 및 안내자료(일반인용)를 개발하고 있으며,











-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에 따른 대처 방법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월 백신 접종 시행 전 질병 관리청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內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 또한, 중중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신고사례 평가를 위해 17개 시·도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 * (역할) 신경과·감염내과 의사 등 민간전문가와 시도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하여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1차 인과성 평가
 -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 보상제도'를 준용하여 국가가 보상할 계획*이다.
 -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对对社 安则 化对社 사회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 5.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 6. 설 연휴 방역수칙 포스터
- 7. 변이바이러스 대응현황 및 강화계획(요약)
- 8. 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및 관련환자 현황
- 9.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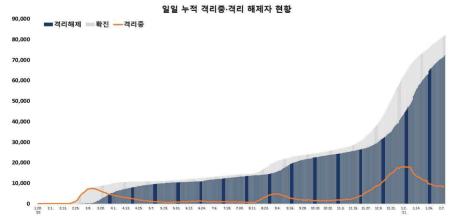
일일 확진자 현황 (2.10. 0시 기준, 81,930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		결과 역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1 12	5 A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64 6				
2.9.(화) 0시 기준	5,987,4051)	81,486 ¹⁾	71,676	8,328 ¹⁾	1,482	82,630	5,823,289			
2.10.(수) 0시 기준	6,030,023	81,930	72,226	8,218	1,486	80,076	5,868,017			
변동	+42,618	+444	+550	-110	+4	-2,554	+44,728			

- * 2월 9일 0시부터 2월 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¹⁾ 중복 집계 정정(2.8. 0시 기준, 검역 -1명)





- 11 -









地过去 安里 电双起 사회

② **지역별 확진자 현황** (2.10. 0시 기준, 81,930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		확진자누계	(9/)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확인사구세	(%)	발생률 [*]						
서울	169	6	25,544	(31.18)	262.43						
부산	18	1	2,922	(3.57)	85.64						
대구	14	2	8,436	(10.30)	346.24						
인천	18	2	4,019	(4.91)	135.96						
광주	14	0	1,922	(2.35)	131.94						
대전	0	0	1,127	(1.38)	76.45						
울산	0	0	948	(1.16)	82.65						
세종	1	0	201	(0.25)	58.72						
 경기	157	12	20,940	(25.56)	158.03						
강원	5	0	1,748	(2.13)	113.47						
충북	2	0	1,622	(1.98)	101.41						
충남	2	0	2,131	(2.60)	100.40						
전북	2	0	1,064	(1.30)	58.55						
전남	1	1	768	(0.94)	41.19						
경북	2	0	3,078	(3.76)	115.61						
경남	9	0	2,084	(2.54)	62.00						
제주	0	0	539	(0.66)	80.36						
검역	0	6	2,8371)	(3.46)	-						
총합계	414	30	81,930 ¹⁾	(100)	158.02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¹⁾ 중복 집계 정정(2.8.0시 기준, 검역 -1명)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TE	합세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8,218	3,724	300	149	314	240	48	12	7	2,008	139	101	165	47	57	157	123	17	610
격리해제	72,226	21,477	2,526	8,076	3,654	1,663	1,064	899	193	18,484	1,575	1,464	1,933	966	704	2,851	1,951	522	2,224
사망	1,486	343	96	211	51	19	15	37	1	448	34	57	33	51	7	70	10	0	3
합 계	81,930	25,544	2,922	8,436	4,019	1,922	1,127	948	201	20,940	1,748	1,622	2,131	1,064	768	3,078	2,084	539	2,837

^{* 2}월 9일 0시부터 2월 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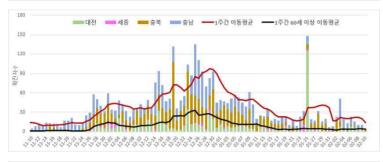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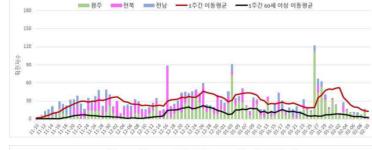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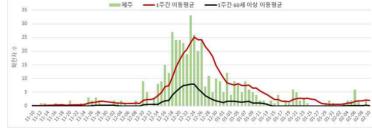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③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2.10. 0시 기준, 81,930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별 발생현황 :	>	
7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 <i>률*</i>
	계	444	(100)	81,930 ¹⁾	(100)	158.02
 성별	남성	249	(56.08)	40,330 ¹⁾	(49.22)	155.94
02	여성	195	(43.92)	41,600	(50.78)	160.09
	80세 이상	10	(2.25)	4,065	(4.96)	214.03
	70-79	30	(6.76)	6,274	(7.66)	173.93
	60-69	54	(12.16)	12,859	(15.70)	202.69
	50-59	84	(18.92)	15,360	(18.75)	177.22
연령	40-49	70	(15.77)	11,793	(14.39)	140.57
	30-39	68	(15.32)	10,471	(12.78)	148.63
	20-29	54	(12.16)	12,411 ¹⁾	(15.15)	182.34
	10-19	52	(11.71)	5,503	(6.72)	111.39
	0-9	22	(4.95)	3,194	(3.90)	76.99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④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2.10.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7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4	(100)	1,486	(100)	1.81				
 성별	남성	3	(75.00)	739	(49.73)	1.83				
70 E	여성	1	(25.00)	747	(50.27)	1.80				
	80세 이상	3	(75.00)	844	(56.80)	20.76				
	70-79	0	(0.00)	404	(27.19)	6.44				
	60-69	1	(25.00)	171	(11.51)	1.33				
	50-59	0	(0.00)	49	(3.30)	0.32				
연령	40-49	0	(0.00)	12	(0.81)	0.10				
	30-39	0	(0.00)	6	(0.40)	0.06				
	20-29	0	(0.00)	0	(0.00)	0.00				
	10-19	0	(0.00)	0	(0.00)	0.00				
	0-9	0	(0.00)	0	(0.00)	0.0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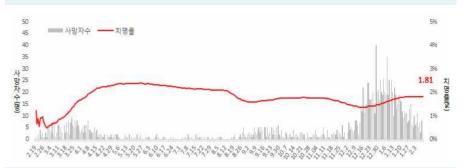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28. 1.29. 1.30. 1.31.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계 251 239 231 229 225 224 220 211 200 197 190 188 189 184

구분	위중증	(%)	
계	184	(100.0)	
80세 이상	41	(22.3)	
70-79세	73	(39.7)	
60-69세	52	(28.3)	
50-59세	12	(6.5)	
40-49세	3	(1.6)	
30-39세	3	(1.6)	
20-29세	0	(0.0)	
10-19세	0	(0.0)	
0-9세	0	(0.0)	

^{*} 위증증: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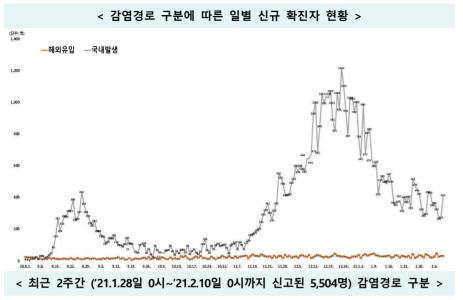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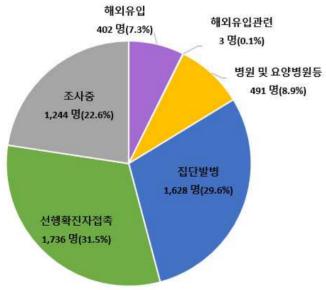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¹⁾ 중복 집계 정정(2.8. 0시 기준, 검역 -1명)



5 감염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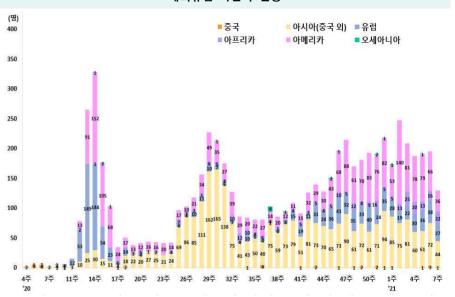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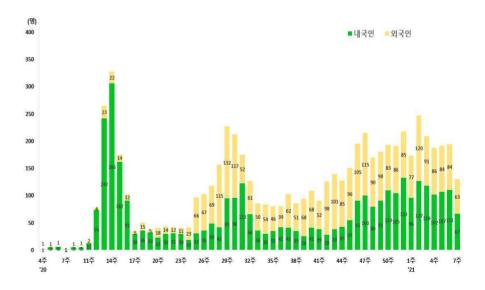




地沙社 安儿 धर्यो 사회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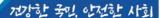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 수요 십난 말생 연왕 >									
				확진환자		명, %)				
지역	누계	해외 유입	소계	집단발 신천지 관련	생 관련 집단 발병	해외유입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서울	25,544	832	9,615	8	9,518	89	8,311	6,786	175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부산	2,922	122	1,807	12	1,739	56	602	391	19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대구	8,436	133	6,215	4,512	1,696	7	1,149	939	16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인천	4,019	214	1,889	2	1,877	10	1,245	671	20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광주	1,922	110	1,517	9	1,502	6	163	132	14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대전	1,127	49	610	2	607	1	298	170	0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울산	948	85	672	16	652	4	116	75	0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세종	201	25	89	1	87	1	47	40	1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경기	20,940	1,416	8,082	29	7,975	78	7,037	4,405	169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강원	1,748	65	1,000	17	982	1	445	238	5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충북	1,622	86	862	6	849	7	425	249	2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충남	2,131	147	1,052	0	1,051	1	561	371	2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8명)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106명)
전북	1,064	102	740	1	738	1	122	100	2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전남	768	66	535	1	524	10	92	75	2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26명)
경북	3,078	138	2,158	565	1,592	1	469	313	2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12명)
경남	2,084	143	1,297	33	1,232	32	368	276	9	• 충북 과도가 음성과 전환되어 병원 관련 (472명)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1명)
제주	539	33	346	0	345	1	89	71	0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0명)
검역	2,837	2,837	0	0	0	0	0	0	6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22명)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습과	81,930	6,603	38,486	5,214	32,966	306	21,539	15,302	444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5명)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19명)
합계	(%)	(8.1)	(47.0)	(6.4)	(40.2)	(0.4)	(26.3)	(18.7)	444	- OB 단구시 기도본 단단(II9정)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水沙社 子儿 化对社 사회

6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2.10.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소 수 (개소) ¹⁾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 ²⁾	확진자(명)
 신규	0	34,673	34,607	0	66	0	98
서울	0	17,379	17,336	0	43	0	60
경기	0	15,204	15,182	0	22	0	36
 인천	0	2,090	2,089	0	1	0	2
 누계	131	1,701,568	1,680,442	4,235	16,843	48³)	4,797
서울	53	795,847	788,235	1,485	6,107	20	2,510
경기	70	770,659	757,417	2,719	10,496	27	1,953
인천	8	135,062	134,790	31	240	1	334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4.~2.10.)

구 분	2.4.	2.5.	2.6.	2.7.	2.8.	2.9.	2.10.	주간누계	총 누계
 계	74,427	72,452	78,581	44,307	34,963	82,942	77,291	464,963	7,731,59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 ¹⁾	46,381	44,083	46,175	23,622	21,221	49,209	42,618	273,309	6,030,023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건) ²⁾	28,046	28,369	32,406	20,685	13,742	33,733	34,673	191,654	1,701,568
신규 확진자 수(명)	451	370	393	371	288	303	444	2,620	81,930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명) ³⁾	85	56	56	67	47	31	98	440	4,797

¹⁾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³⁾ 양성 32건, 음성 16건

²⁾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 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³⁾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74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누적 발생 시규 발생 치명률					
구분	무식 7 확진자	일생 사망자	<u>신규</u> 확진자	달생 사망자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
미국			<u>확선자</u> 91,412		(%)	
인도	26,746,377	459,993		1,449		8,080.48
인도 브라질	10,847,304	155,158	9,110	78	1.43	786.04
· —	9,524,640	231,534	26,845	522	2.43 1.94	4,480.08
러시아	3,998,216	77,598	15,019	530		2,740.38
영국	3,959,788	112,798	14,104	333	2.85	5,831.79
프랑스	3,285,786	79,016	3,566	456	2.40	5,031.83
스페인1)	2,913,425	60,802		-	2.09	6,225.27
이탈리아	2,644,707	91,580	7,969	307	3.46	4,371.42
터키	2,539,559	26,900	8,103	103	1.06	3,012.53
독일	2,291,924	62,156	3,379	481	2.71	2,734.99
콜롬비아	2,157,216	55,993	6,009	300	2.60	4,238.15
아르헨티나	1,980,347	49,171	3,658	61	2.48	4,381.30
멕시코	1,932,145	166,200	6,065	414	8.60	1,498.95
폴란드	1,556,685	39,360	3,999	228	2.53	4,118.21
남아프리카공화국	1,477,511	46,473	1,376	183	3.15	2,491.59
이란	1,473,756	58,536	7,321	67	3.97	1,754.47
우크라이나	1,249,646	23,771	2,656	127	1.90	2,859.60
페루	1,186,698	42,308	6,220	187	3.57	3,596.05
인도네시아	1,166,079	31,763	8,242	207	2.72	426.35
체코	1,045,132	17,497	7,727	164	1.67	9,767.59
네덜란드	1,007,981	14,428	2,273	25	1.43	5,894.63
캐나다	804,260	20,767	3,203	65	2.58	2,133.32
포르투갈	767,919	14,354	2,505	196	1.87	7,528.62
칠레	755,350	19,056	3,464	82	2.52	3,954.71
루마니아	746,637	18,961	1,319	80	2.54	3,888.73
방글라데시	538,378	8,221	316	16	1.53	326.88
필리핀	538,995	11,231	1,685	52	2.08	491.78
일본	406,766	6,476	1,776	81	1.59	321.55
헝가리	378,734	13,249	1,079	94	3.50	3,904.47
네팔	272,055	2,045	130	7	0.75	934.90
미얀마	141,427	3,177	123	2	2.25	259.98
중국	89,734	4,636	14	0	5.17	6.23
키르기스스탄	85,171	1,433	58	2	1.68	5.92
우즈베키스탄	79,204	621	42	0	0.78	62.61
태국	23,746	79	189	0	0.33	34.02
베트남	2,053	35	48	0	1.70	2.11
대한민국	81,930	1,486	444	4	1.81	158.06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¹⁾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업데이트 없음)









地震 子见 心对社 外到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사적 모임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u>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u>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사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mark>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통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mark>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심당·카페 모두 21시~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간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u>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u>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등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 샤워실 운영 시 이용자간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心沙社 多见, 心对社 从到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u> </u>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10, 000, == 10,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u>시설 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u>
	학원·교습소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독서실 제외)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u>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u>
		▶ <u>숙박시설 운영 금지</u>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직업훈련기관	▶ 음식 업위 음시(돌·구월을 음표는 여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ㅋㅂ군단기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 ^ 글 데에시는 ZHN(되고 HH) 기리구기 문구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ŀ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0-11-10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748B	▶ <u>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u>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0-1-2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mark>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mark>
	= 44=1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축시열·스타니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미용업	
		▶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u>▶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u>
	비취되다하다	→ <u>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u>
	백화점·대형마트	<u>집객행사 금지</u> ○ 입장 후사공자(후계사 이지) 이용 금지
		▶ <u>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u>
-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300m² 이상)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心沙社 到, 心对社 사회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평생교육기관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등교	▶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직장근무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 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돈	!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 <u>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u>
사적 모임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사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mark>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mark>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m'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u>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u>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사설 <i>포</i> 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방상장 눈쐘매장)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心沙社 到, 心对社 사회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1 =	① 시설 면적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직업훈련기관	① 시설 면적 4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국 B 문 단 기 단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34143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이를 한국 6M 등 기능으로 한편 세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3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백화점·대형마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백화심·내영마트	▶ 진객해사 금지
	▶ <u>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u>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m² 이상)	▶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숙박시설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3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③ 결정 및 사외경세역 결정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교통시설 이용 스포츠 관람	▶ 마으크 작용, 사용 내 음식섭위 음시(국제왕용편 제외) ▶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u>о</u> ш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スコ おに	
종교활동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근무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48 <u>-</u> T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 민산기업 중도 인원의 1/3 이성(필구인원 제외만 인원 기운) 제덱근두 중 근무형태 개선 권고
	- 근무형테 세인 전포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Limes xini는 우리 모두의 가장







地方社 多见 心对社 사회

붙임 5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 대책 개요

- 기간 : 2. 1.(월) ~ 2. 14.(일) * 설 연휴 : 2.11.(목)~2.14.(일)
- **방향** :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

□ 주요 내용

- (교통수단·교통시설 방역강화)
 - 철도 승차권은 창가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검토,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
 - 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운영 및 실내취식 금지
-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제공
- 명절 전후 **봉안시설** 총 5주(1월 4주~2월 4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수용가능 인원의 30%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관리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면회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 통화를 이용한 면회 시행 권고
- (방역 및 의료대응)
 -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차질없이 운영,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 지속 실시 등









ガンさと 子U oとなると 사회

붙임 6

설 연휴 방역수칙 포스터













붙임 7

변이바이러스 대응현황 및 강화계획(요약)

구 분	현 행 조 치	강 화 조 치
위험도 평가	○ 국가별 <u>확진자 수</u> 등에 따라 '방역강화, 추이감시, 교류가능 국가' 지정	○ 국가별 <u>변이바이러스 점유율</u> 등 고려하여 <u>방역</u> <u>강화국가 등 지정</u>
	* 방역강화국 (4개): 필리핀, 네팔, 영국, 남아공	
	○ 방역강화국(4개) 입국 제한	↓ *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과 연계 시행
입국	- 정기항공편 축소 운영(좌석 점유율 60% 이하) * 영국: 정기항공편 중단(~2.25) - 부정기항공편 운항 중지	O TO 보다가 O 시 O 된 단계 시 O
1	- 신규 비자발급 중단, 입국심사 강화 등	
+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외국인)	↓ │○ 모든 해외입국자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검역	- 외국인: 방역강화국 → 모든 나라(1.8.~) - 내국인: 변이3국(영,남아궁,브, 1.1~) ○ 발열기준 강화(37.5→37.3°C), 유증상 동행자 진단검사 (변이3국, 12.23~)	의무화 * 내국인: 변이3국 발(1.1~) → 아프리카 발 (2.22~) → 모든 해외입국자(2.24~)
1		<u> </u>
격리	○ 격리면제자 대상 검사 강화 - PCR 음성확인서 제출(변이바이러스발생국 내- 외국인 격리면제자) -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 격리면제제도 축소 운영: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은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원칙	모든 국가 發 격리면제자) -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 검사(계속)
	○ 해외입국 전후 2~3회 검사 실시	↓ ○ 모든 해외입국자는 3회 검사 실시
진단 검사	 에되답국 전부 2~3의 검사 결사 입국 전 검사: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화(1.8~) 입국 직후 검사: 시설검사(변이3국) 또는 자가격리 후 1일 이내(1.18~) 격리해제 전 검사: 전체 해외입국자(12.30~) * 교류가능국가 제외 	 ○ 모든 애되답작사는 3의 답사 열시 - 입국 전 검사: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 입국 후 검사: 시설검사 대상 확대(아프리카 국가 추가, 2.22~) - 격리해제 전 검사 : 동일
변이 분석	○ 해외유와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전수 ~5%이내 표본 분석 * 변이3국, UAE, 시리아, 아프리카 발 확진자는 전수 ○ 국내: 집단발생 위주	 ○ 분석대상 확대: 국내는 집단발생 위주→ 집단 및 지역별 사례로 확대 ○ 분석기관 확대: 2개→ 8개 ○ 분석기간 단축: 최소 5일→ 최소 3일
↓	. 버스크 이 그 취지된 버스폰 환지된 만 신부된	
환자 관리	○ 변이3국 입국 확진자, 변이주 확진자 및 의심자: 1인실 격리, 검사기반 격리해제(시설격리 원칙) 등(1.2~)	· <u>애외유입 확신사</u> 선세 1인실 격리









地震 子见 化对社 사회

붙임 8

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및 관련환자 현황

○ 11개 시·도 40개 시설 중 **5개 시·도 6개 시설에서 412명**(+3) 확진

시·도	확진자	발생 시설명	확진자	비고
	6개소		412 (+3)	
	광주 CAS/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학생 및 교직원 관련	140 (+2)	
광주		예수복제 캠프 관련 (1.18.~1.20.)	33	울산 한다연구소 3명 양산 베들레헴 TCS 7명 서울 방문자 관련 4명 경기 방문자 관련 19명 포함 * 경기 1명을 서울로 재분류
	광주 에이스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53	북구교회 11명, 어린이집 21명 관련 사례로 포함
대전	IM 선 (IEM 미인가 대안	교회 본부 · 교육시설/MTS 과정)	184 (+1)	IEM 143명 / MTS 41명(+1) (홍천에서 확진된 39명 포함)
울산	한디	나연구소	(3)	광주 TCS 예수복제 캠프에 포함
경기	안성 TCS 미인	<u>!</u> 가 대안 교육시설	2	예수복제 캠프 방문자 및 추가전파자 분류 변경
경남	양산 베들레헴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7)	광주 TCS 예수복제 캠프에 포함

^{*} 시·도별 관련 시설현황(총 40개소) : 서울(4), 부산(2), 대구(1), 인천(2), 광주(5), 대전(2), 울산(1), 경기(11), 강원(1), 충남(1), 전남(3), 경북(4), 경남(3)

[※] 특정 시점에 시고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かかまた 子り のはなると れも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워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부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간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31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地对社 安里 处对社 사色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 …홋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궈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 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첚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 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 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담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3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 》 또는 시장 구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 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